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538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20077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5386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12. 4.

판결 선고 2016. 1. 8.

주 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318,137원 및 그 중 201,810,036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38,304,949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각 2015. 8.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 사이에 2015. 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22. 접수 제4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318,137원 및 그 중 201,810,036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38,304,949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3. 18.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2. 3. 16.까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변제기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이 각 2015. 3. 13.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6. 23. 하나은행으로부터 233,781,067원을 변제기 2015. 6. 22.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5. 6. 22.까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1. 26. 사업장 폐쇄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신하여 2015. 4. 27.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202,267,346원을, 2015. 5. 29.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38,304,949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27. 피고 A로부터 457,31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제2 대출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과 확정손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은 156,730원이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합계 1,046,422원이다. 나아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일인 2015. 4.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2. 4.까지 연 12%이다.

마. 피고 B는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42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잔금 365,000,000원 중 55,000,000원을 2015. 3. 30.까지 각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10,000,000원은 피고 C이 피고 B의 복원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0원 및 D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1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위 잔금 55,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 22. 접수 제41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다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장의 회신,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 중 미상환금액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위약금, 확정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합산한 241,318,137원(= 202,267,346원 - 457,310원 + 38,304,949원 + 156,730원 + 1,046,422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 잔액 201,810,036원(= 202,267,346원 - 457,31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4. 27.부터,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 38,304,94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5.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8. 5.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5. 1. 26. 사업장 폐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4~5개월만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사해의사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A, B가 주유소 영업을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바로 인접한 토지에서 자동차공업사 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고

A, B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 B의 주유소 영업이 부진하여 조만간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 C으로부터 잔금 중 채무인수로 갈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원을 2015. 3. 30.까지 지급받고 그와 상환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후 바로 다음날에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 제출한 을다 제2호증에 매매대금의 입금계좌(농협 E, 예금주 B)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의 날인조차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이상률

판사김유신

별지